

#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03
----------	-----------

제안년월일: 2023년 4월 27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상위법에서 이미 부여하고 있는 사업자의 책무를 시장이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안 방법이 아니며, 1회용품 저감 등을 위한 시장의 지원 사업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 감량 책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마중물 형태로 일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 제6조제4항과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의 확대를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1회용품 저감 사업에 포장재 사용 저감 사업을 포함하고자 함.

### 2. 주요 골자

- 포장재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4호).
-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삭제함(안 제6조제4항).
- 시장의 지원사업에 포장재 사용 저감 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3호).
- 1회용품 저감 사업의 민간위탁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3항).

### 3. 참고사항: 생략

#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제2조(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 <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 -----.</p> <p>1. ~ 3. (개정안과 같음) 4. <u>“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u></p>
<p>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p> <p>① (생략)</p> <p>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4. (생략) <u>&lt;신설&gt;</u></p> <p>5. (생략) <u>&lt;신설&gt;</u></p>	<p>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4. (현행과 같음) 5. <u>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u>시장은 전년도 추진계획의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개정안과 같음)</p>
<p>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p> <p>① ~ ③ (생략) <u>&lt;신설&gt;</u></p>	<p>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u></p>	<p>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p> <p>① ~ ③ (개정안과 같음) <u>&lt;삭제&gt;</u></p>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  
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  
나 제공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신설>

3. (생략)

② (생략)

<신설>

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  
을 권고할 수 있다.

⑤ ----- 제4항-----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  
항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① -----

1. 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 포장·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저  
감을 위한 사업

4.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  
치 및 운영 사업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  
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한 조례」를 따른다.

④ ----- 제3항-----

⑤·⑥ (개정안 제6항 및 제  
7항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① -----

1. 2. (개정안과 같음)

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 5.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삭제>

##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③ 시장은 전년도 추진계획의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p>
<p>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p> <p>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4. (생 략)</p> <p>〈신 설〉</p> <p>5. (생 략)</p> <p>〈신 설〉</p>	<p>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③ 시장은 전년도 추진계획의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3. (생 략)</p> <p>② (생 략)</p>	<p>제7조(지원사업) ①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p> <p>4.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p> <p>5.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